

충청북도소규모양곡가공업허가절차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(안)

심 사 보 고

농림수산위원회
1994. 12. 26.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나. 제출 및 회부일자

- 제출 일자 : 1994년 12월 22일
- 회부 일자 : 1994년 12월 22일

다. 상정 일자 : 제109회 정기회

- 제 4 차 농림수산위원회 (1994. 12. 23) 상정 의결

2. 제안 설명 요지

(제안설명자 : 농정국장 손 문 주)

가. 제안 이유

- 양곡관리법 및 동법시행령 개정으로 양곡가공업이 허가제에서 등록제로의 전환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코자 함.

나. 주요 골자

- 양곡관리법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
 - 양곡가공업이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
 - 양곡관리법령에 따라 등록업무 수행이 가능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(전문위원 : 이 병 생)

본 개정조례안은 양곡관리법 및 동법시행령의 개정으로 양곡가공업이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되어,

양곡가공업 등록이 양곡관리법령으로 등록이 가능함에 따라 소규모양곡가공업 허가 절차에 관한 본 조례는 폐지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.

4. 질의 및 답변 요지 : " 없 음 "

5. 검 토 요 지 : " 없 음 "

6. 심 사 결 과 : " 원 안 가 결 "

7. 소 수 의 견 요 지 : " 없 음 "

8. 기 타 필 요 한 사 항 : " 없 음 "

9. 별 첨

· 충청북도소규모양곡가공업허가절차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(안) 1부. "끝"